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11. 15.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. 11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19. 12. 9.)
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- 제안설명자: 도시안전과장 안수기

1)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입안기준 및 상위법령과 중복 및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
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.

2)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과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4조제3호)
- 나.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
(안 제8조제2항)
- 다.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반환규정 신설(안 제23조제2항)

3)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2)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(필요없음)

다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19. 10. 4.~ 10. 25.(의견 없음)
- 2) 행정규제 사전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폐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신준호)

가. 조례 개정 배경

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내용과 상위 법령과의 중복성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중 전광류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삭제(안 제4조제3호)
- 주민협의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규정이 상 위법령과 맞지 않아 수정(안 제8조제2항)
-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의 반환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2항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제3호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,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중복하여 불필요한 조문이었으며, 허가·신고 대상 광고물이 아님에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고,
- 안 제8조제2항의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이 위원장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잘못 운영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임.
- 안 제23조제2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소극행정으로 주민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고 민법상 부당이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을 바로잡는 사항임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동안 소극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했던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